

II.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종묘분야)

산 립 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임</p> <p>제45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 ①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종자(접순·적꽃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학교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p> <p>②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품종심사를 거쳐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당해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p> <p>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림</p>	<p>제5절 종·묘 관리 및 채종림 등</p> <p>제39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을 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5.8.30, 2000.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1.2.23, 2000.5.16></p> <p>③종·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1995.8.30, 2000.5.16></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모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신청절차, 품종심사, 공고등 품종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모생산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2.5]</p>	<p>제45조(중·모생산업자의 자격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모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0.7.14, 1992.2.22, 1994.3.2, 1995.6.23, 1996.8.8, 1997.11.29, 1999.8.6, 2000.5.16></p> <p>1. 조림용 중·모생산업자의 등록자격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농업직 또는 임업직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 중·모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p> <p>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중·모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p> <p>라.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중·모기술관계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p> <p>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p>	<p>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2. 등록증</p> <p>④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6.19, 2000.5.16></p> <p>⑤삭제 <1999.11.22></p> <p>⑥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1.2.23, 1999.11.22></p> <p>⑦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6.2.21, 1995.8.30, 1999.11.22></p>	<p>제39조의2(버섯종균의 등록)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종 포고버섯·갯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1995.8.30></p>
---	--	---	--

산 림 법	산 림 법 시 행 령	산 림 법 시 행 규 칙
<p>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립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p> <p>2. 삭제 <1999.8.6></p> <p>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 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 종균 제조업계에 7년이상 종사한 자</p> <p>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② 및 ③삭제 <1999.8.6></p>	<p>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립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p> <p>2. 삭제 <1999.8.6></p> <p>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 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균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 종균 제조업계에 7년이상 종사한 자</p> <p>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p> <p>② 및 ③삭제 <1999.8.6></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가 그 품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것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p> <p>1.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품종설명서</p> <p>2. 재배포시범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p> <p>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p> <p>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p> <p>③산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버섯 종균의 품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업연구관장으로 하여금 품종의 구별성·재배 가치성 및 신규성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p> <p>④임업연구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품종의 구별성·재배가치성 및 신규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간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임업연구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1.22></p>

⑥임업연구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⑦산림청장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연구원장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등록목적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⑧산림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⑨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의하되, 그 공고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1999.11.22>

⑩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22>

[본조신설 1990.7.14]

산 립 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제46조(품질보증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는 그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4.12.22, 1996.8.8></p>		<p>제40조(품질보증표 및 장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 제35호의2서식에 의하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p>
<p>제47조(종·묘의 검사등) 시·도지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9.2.5]</p>	<p>제46조(종·묘검사)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7.14, 1994.3.2, 1995.6.23, 1996.8.8, 1999.8.6, 2000.5.16> 1. 검사대상 종·묘가 파다하여 관계 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2. 종·묘생산업자(마을 또는 학교를 포함한다)로부터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1999.8.6></p>	
	<p>제46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p>	<p>제40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이 시행령</p>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7.14, 1996.8.8, 1997.11.29>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7.11.29>

[본조신설 1981.12.31]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로
 4. 인건비
 5. 급 리
 6. 기임이윤
 7. 삭제 <1986.2.21>
 8.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 [본조신설 1982.2.13]

제41조(종·묘의 검사등) 범 제47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
2. 기타 시·도지사가 종·묘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1999.11.22]

제41조의2(종·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5.8.30, 99.11.22>

[본조신설 1994.4.18]

제48조(등록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종·묘 생산업자가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종·묘 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9.2.5,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45조제1항의

산 립 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1999.2.5></p> <p>제49조(채종립등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립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p> <p>②산림청장은 채종립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p> <p>③산림청장은 수종경신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및 채수포(採穗圃)를 조성·확보하여야 한다.</p> <p><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p>	<p>제47조(채종원등) 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개정 1990.7.14, 1995.12.29, 2000.5.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연도 5. 종자채취연도 및 채취량 6. 관리자 7. 기타 제한사항 	<p>제42조(채종립등의 지정·고시)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립 또는 수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학술연구 기타 임업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1998.2.13, 2001.7.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p>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임업연구원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 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4, 1995.12.29, 2000.5.16, 2001.7.2>

제50조(채종림등의 관리) ①삭제 <1999.2.5>

②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시업·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2.29, 1999.2.5, 2000.1.28>

제51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산림청장은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29, 2000.1.28>

제52조(준용규정) 채종림 또는 수형목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 립 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제7장 보 칙</p> <p>제1절 삭제 <개정 1997.4.10></p> <p>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 삭제 <1997.4.10></p> <p>제2절 산림보험등</p> <p>제113조(산림보험등의 가입) ①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한다. <개정 1994.12.22, 2000.1.21> ②삭제 <1994.12.22></p>	<p>제8장 보 칙</p> <p>제109조 내지 제110조의3 삭제 <1997.11.29></p> <p>제111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목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3.2, 2000.5.16> [전문개정 1985.12.31]</p>	<p>제7장 보 칙</p> <p>제106조(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 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운영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②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p>
<p>제114조(재해에 대한 보상) 정부는 한해·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한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p>		

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8, 1998.2.13, 2000.5.16>

③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금기준, 제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전문개정 1986.2.21]

산 립 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제8장 별 칙</p> <p>제122조(벌금)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45조제3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등을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가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삭제 <1999.2.5> [전문개정 1997.4.10] <p>제123조 삭제 <1997.4.10></p> <p>제124조 삭제 <1990.1.13></p>		

제125조(과태료) ①삭제 <1997.4.1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삭제 <1999.2.5>
2. 제50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999.2.5>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물의 유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동형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3.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1997.4.10, 1999.2.5>

1. 삭제 <1999.2.5>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3.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4.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임산한 자

산 립 법	산 립 법 시행령	산 립 법 시행규칙
<p>5. 제1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개정 1990.12.31, 1997.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1999.2.5> 2.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4. 삭제 <1999.2.5> ⑥삭제 <1997.4.10> ⑦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 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p><신설 1994.12.22, 1999.2.5></p> <p>⑧삭제 <1999.2.5></p> <p>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22, 1995.12.29, 1999.2.5></p> <p>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7.4.10></p> 	<p>제112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2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개정 1992.2.22, 1997.11.29></p> <p>②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 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p>	<p>제108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p> <p>①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②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11.22]</p>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0.12.31, 1997.4.10>

⑫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0.12.31, 1997.4.10>

[전문개정 1990.1.13]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③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29>

[본조신설 1990.7.14]